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한양특허법인
대한민국 06296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38길 12, 한양빌딩

발송일 (일/월/년) 2018년 01월 29일 (29.01.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FC17129PCDWK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7/009950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7년 09월 11일 (11.09.2017)

우선일 (일/월/년)
2016년 09월 12일 (12.09.2016)

국제특허분류(IPC)
C09J 133/12(2006.01)i, C09J 175/14(2006.01)i, C09J 7/02(2006.01)i

출원인
동우 화인캠 주식회사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01월 29일 (29.01.2018)

심사관
김선희
전화번호 +82-42-481-5405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0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JP 2011-178874 A (HITACHI MAXELL LTD.) 2011.09.15

D2: KR 10-2016-0093803 A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등) 2016.08.09

※ 청구항 제1항은 물리량(중량평균분자량)을 특정하고 있는데,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가이드라인'의 단락 4.24에 따르면, 물리량은 단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단계 진입 시 체약국에 따라서는 단위 기재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2.1. 신규성 및 진보성

2.1.1. 청구항 제1항

인용문헌 D1에 반도체 소자 등의 제조 공정에서 다이싱 점착필름으로 사용되는 광중합 개시제를 함유하는 방사선 경화성 점착제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조성물은 분자내에 방사선 반응성 탄소 이중결합을 갖는 (메타)아크릴계 폴리머를 포함하며, 상기 폴리머는 베이스 폴리머로서 탄소수 8 이상의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기 함유 (메타)아크릴계 모노머 (2-에틸헥실 (메타)아크릴레이트 등) 87.0-93.5질량% 및 수산기 함유 (메타)아크릴계 모노머 (2-히드록시 (메타)아크릴레이트, 4-히드록시부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등) 5.0-13.0질량%로부터 제조되며, 실시예에 베이스 폴리머 100부에 방사선 반응성 탄소 이중결합을 갖는 2-이소시아네이트에틸 메타크릴레이트 10부를 반응시켜 (메타)아크릴계 폴리머의 측쇄 및/또는 말단에 방사선 반응성 탄소 이중결합이 형성된 중량평균분자량이 70만인 (메타)아크릴계 폴리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락 [0002], [0026]-[0030], [0033]-[0039], [0053]-[0054] 참조).

청구항 제1항은 (1) 유리전이온도가 -60°C 내지 -40°C인 히드록시기 C4~C6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 아크릴레이트 단량체를 사용하여 제조된 (메타)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를 포함하며, (2) 히드록시기 함유 아크릴계 공중합체와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 (메타)아크릴레이트계 단량체가 우레탄 결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제1항은 광경화성 (메타)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중량평균분자량을 기재하고 있지만, 중량평균분자량의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항이 지시하는 바가 불명료합니다 (PCT 제6조).

명세서 단락 [103], [106] 및 [109]에 기재된 "제조예 1"은 "제조예 1-1"의 오기로 판단됩니다 (PCT 제5조).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상기 차이점 (1)과 관련하여, 인용문헌 D1과 동일한 기술 분야인 아크릴계 점착제를 기재하고 있는 인용문헌 D2에 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 80중량% 및 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 20중량%를 포함하는 아크릴계 단량체 혼합물로부터 제조된 (메트)아크릴계 공중합체를 경화시켜 제조된 유리전이온도가 -60°C 내지 -20°C 인 점착필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유리전이온도 범위에서 점착필름의 저온 점탄성 특성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동시에 접힘성이 우수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1; 및 단락 [0030], [0059]-[0065], [0079] 참조).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으로부터 상기 차이점 (1)을 도출해 내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해당합니다.

상기 차이점 (2)와 관련하여,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기 함유 (메타)아크릴계 모노머와 수산기 함유 (메타)아크릴계 모노머로부터 제조된 베이스 폴리머에 방사선 반응성 탄소 이중결합을 갖는 2-이소시아네이트에틸 메타크릴레이트를 반응시켜 (메타)아크릴계 폴리머의 측쇄 및/또는 말단에 방사선 반응성 탄소 이중결합이 형성된 (메타)아크릴계 폴리머로부터 (단락 [0027], [0033], [0053]-[0054] 참조) 상기 차이점 (2)를 도출해 내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으로부터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1.2. 청구항 제2항 내지 제7항

청구항 제2항의 추가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유리전이온도가 -70°C ~ -50°C 인 C4~C12의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 아크릴레이트 단량체로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탄소수 8 이상의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기 함유 (메타)아크릴계 모노머 (2-에틸헥실 (메타)아크릴레이트 등)가 대응되며 (단락 [0028] 참조), 유리전이온도가 -60°C ~ -40°C 인 히드록시 C4~C6의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 아크릴레이트 단량체를 사용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 및 D2와 차이가 있지만, 상기 단락 2.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유리전이온도가 -60°C 내지 -20°C 인 수산기를 함유하는 (메트)아크릴계 공중합체로부터 제조된 점착필름을 고려해 볼 때 (청구항 1; 및 단락 [0030], [0059]-[0065], [0079] 참조), 저온의 유리전이온도를 갖는 단량체를 선택하여 청구항 제2항 발명을 도출해 내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추가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인용문헌 D1는 (메타)아크릴계 폴리머 100질량부에 대하여 0.01-5질량부의 광중합 개시제와 0.01-5질량부의 가교제 (폴리 이소시아네이트계 가교제 등)를 포함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청구항 4; 및 단락 [0038]-[0039] 참조).

청구항 제5항의 추가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인용문헌 D1은 실시예에 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 90부와 2-히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 10부를 200부의 에틸아세테이트에 첨가한 후, 이를 용액 라디칼 중합시켜 합성되는 베이스 폴리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단락 [0053] 참조). 용액 중합에 용매를 첨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으로, 이들 용매의 함량 또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로 인한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에 해당합니다.

청구항 제7항의 추가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인용문헌 D1에 2-이소시아네이트에틸 메타아크릴레이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락 [0054] 참조).

따라서 청구항 제2항 내지 제7항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으로부터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1.3. 청구항 제8항 내지 제10항

청구항 제8항은 제1항의 광학 투명 점착제 조성물을 전사필름에 코팅하여 제조되는 광학투명 점착제 필름에 관한 것이고, 청구항 제9항은 제1항의 광학 투명 점착제 조성물로 형성된 점착층을 포함하는 평판표시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상기 단락 2.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항 제1항의 광학 투명 점착제 조성물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할 것입니다. 또한 인용문헌 D1은 반도체 소자 등의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이싱 점착필름으로, (메타)아크릴계 폴리머로부터 제조된 방사선 경화성 점착제 조성물을 PET 필름 위에 코팅하여 점착제층을 형성한 후, 가열 및 코로나 방전 처리하여 필름을 형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단락 [0002], [0057]-[0058] 참조), 인용문헌 D2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점착 필름이 점착제 조성물 용액을 2매의 PET 이형필름 사이에 넣고 코팅한 후 UV-A 파장으로 경화시켜 제조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락 [0003], [0065] 참조). 따라서 청구항 제8항 및 제9항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으로부터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제10항의 추가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인용문헌 D2에 플렉서블/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점착필름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락 [0002] 참조). 따라서 청구항 제10항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으로부터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